학점은행제운영규정 5-1-9

규정번호 5-1-9
제정일자 2002.11.4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12차 개정
관리부서 평생교육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23조의 5(학점은행제 운영)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본 과정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실기고사, 구술고사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등록) 학점인정 과정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 및 수업일수) 학점인정 과정의 등록생은 본 과정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관할청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평가 인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0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당 기준 강의시간은 최소 4주 이상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학점 신청) 학점인정 과정에 등록하여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 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0.29.)

제12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 학습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95 ~ 100	4.5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D^{+}	65 ~ 69	1.5	
D^{O}	60 ~ 64	1.0	
F	0 ~ 59	0	

제15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과목의 성적이 D^{O} 이상일 것

제16조(학점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1. 학점인정과정 입학자격이 안 된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제17조(졸업취소) 일단 졸업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1.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학점취소를 당한 자(개정 2024.7.24.)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제18조(졸업인정학점)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2년제 8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3.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19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의 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전공 45학점(전필포함)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본인의 학위전 공과 다른 전공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개정 2018.10.29.,2024.7.24)
3. 우리대학에서 48학점(다른 전공의 경우 36학점 또는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호 삭제 2018.10.29.)

②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8.08.27., 2018.10.29)

③ (항 삭제 2018.10.29.)

제20조(학위수여) ① 제19조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8.10.29.)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칙 제23조의 8의 전공 및 학위 종별에 따른다.(개정 2018.10.29.)

제21조(학위신청)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의해 내용을 충족하는 자가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24.7.24.)

1. 학위 수여 신청서(소정양식)
2. 학점 이수증명서(본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

제22조(학위수여 심사)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를 위해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적 관리) ① 학점인정 과정 등록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29.)

②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지침”에 따라 학습자의 학점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이관하여 학위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③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신설 2018.10.29.)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및 제15조의 2호는 개정일로 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62> <생략>

<63>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②, 별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4조, 제19조①·③,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4>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4> <생략>

<35>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②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한다.

<36>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7조제1호, 제19조제2호, 제21조)

【별표 1】【 학점인정 가능한 학점원 (제15조 관련) 】

학 점 원	학 점 인 정 기 준
평가인정 학습과목	출석률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인정,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
자격	①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②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공 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독학학위제	1단계는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20학점), 2~4단계는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1단계는 교양, 2~4단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과위원회 심의
학점인정 대상학교	①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②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③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해당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①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 부여 방식에 따름 ②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시 교양으로 인정)

【 학점인정 불가능한 학점원 】

학 점 원	학점인정 기준
평가인정 이전 평생교육원, 전산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과목	1998년도 평가인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 수강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산원 등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점 불인정(1998년도 이후의 경우에도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점 불인정)
대학의 연수과정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연수과정의 학습과목은 학점 불인정

【별지 제1호 서식】(제20조 학위수여 관련)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명지전문대학에서 (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

관할청 학위등록번호 : 명지 - 학점 - 연도 - 0000

※ 관할청은 당해연도 정부조직법에 준함.

【별지 제2호 서식】(제23조 학적관리 관련)(신설 2018.10.29.)

제 호

학 위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위취득일 :
학위등록번호 : 명지전문대학-학점-년도-0000
학 위 종 별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 및 학칙제23조6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3호 서식】(제23조 학적관리 관련) (신설 2018.10.29.)

성 적 증 명 서

전 공				총취득학점		학위등록번호	명지전문대학-학점-연도-0000
성 명		입학일자		총평균학점		학 위 종 별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전체백분율		제 적 일 자	

구분 이수과목	학점	등급	점수	구분 이수과목	학점	등급	점수	구분 이수과목	학점	등급	점수
0000년도 0학기				0000년도 0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균평점: 백 분 율: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균평점: 백 분 율:							
0000년도 0학기				0000년도 0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균평점: 백 분 율: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균평점: 백 분 율:							

제 호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취급자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 및 학칙제23조6의 규정에 의함.